

1. 개정이유

자동차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는 내용으로 「자동차관리법」이 개정(법률 제18051호, 2021. 4. 13. 공포, 2021. 10. 14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자동차검사 이행명령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운행정지 이행사항
(안 제63조의2제2항, 제64조제1항, 제64조의2)

- 자동차검사 이행명령 후 1년 이상 경과하여 운행정지를 명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운행정지 명령에 대한 사전 고지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
- 또한 자동차검사 이행명령 후 1년 이상 경과하여 운행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도 운행정지명령서를 발급 하려는 것임
- 운행정지 명령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는 규정 이 법률에서 삭제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있는 등록번호판 영치에 관한 이행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1항제1의2호를 삭제 한다.

제63조의2제2항 중 “법 제37조제3항에”를 “법 제37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전단에”로 하고, “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”를 “운행정지가 될 수”로 한다.

제64조제1항 중 “법 제37조제2항 후단에”를 “법 제37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전단에”로 한다.

제64조의2를 삭제한다.

제150조제1항제7의2호 중 “명령 및 등록번호판 영치에”를 “명령에”로 한다.

별지 제37호의2서식 뒤쪽 자동차검사명령서 중 “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”를 “운행정지가 될 수”로 하고, “같은 법 제81조제22호”를 “같은 법 제81조제22호 및 제22의2호”로 한다.

별지 제38호서식 뒤쪽 내용 중 “제81조제2호” 및 “300만원”을 각각 “제81조제22의2호” 및 “1천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자동차검사명령서

(앞 쪽)

우 편 엽 서

보내는 사람

자동차검사
명령서

주소:

자동차등록번호:

정 기 검 사 일:

□□□-□□□

받는 사람

주소:

성명:

□□□-□□□

(뒤 쪽)

자동차검사명령서

앞쪽에 기재된 귀하(사)의 자동차는 정기검사기간이 지나 정기검사를 받도록 안내하였으나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어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및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를 명령하오니 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일 이내에 가까운 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
※ 정기검사를 받았거나 전출, 말소등록등을 한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전화 또는 우편(팩스)등으로 등록사항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
※ 귀하(사)가 소유한 자동차의 등록증에는 검사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니 수시로 확인하여 정기검사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가 될 수 있으며, 같은 법 제81조제22호 및 같은 조제22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

주: 자동차검사명령서의 내용은 추가하거나 바꾸어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.

180mm×280mm[백상지 80 g/m²]

제 호		
운행정지명령서		
소 유 자	①성명(명칭)	(운전자성명 :)
	②주 소	
③자 동 차 등 록 번 호		
위 반	④일 시	
	⑤장 소	
	⑥내 용	
⑦운 행 정 지 기 간		. . . ~ . . . (일간)
위의 자동차에 대하여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정지를 명합니다.		
년 월 일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 인		
주 : 이 명령서를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「자동차 관리법」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또는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목적을 위한 임시 운행외에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.		

33331-03511일

210mm×297mm

96.10.4 승인

(일반용지 60g/m²)

(뒤 쪽)

○이 표는 다음 사람외에는 제거하지 못합니다.

·재검사에 합격한 때 : 이 자동차를 검사한 검사원

·정비를 받은 때 : 이 자동차를 정비한 정비업체의 정비책임자

※ 이 운행정지명령서를 받은 자동차를 임의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2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비고

1. 바탕색은 백색으로, 문자는 적색으로 한다.
2. 이 표는 앞면유리 우측상단에 붙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8조(운행정지중인 자동차의 임시운행)① (생략)	제28조(운행정지중인 자동차의 임시운행)① (현행과 같음)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<u>1의2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</u>	<u><삭 제></u>
2~6 (생략)	2~6 (현행과 같음)
②~③ (생략)	②~③ (현행과 같음)
제63조의2(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)	제63조의2(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)
①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명하는 경우에는 <u>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는 사실을</u> 알려야 한다.	②----- ----- ---- <u>법 제37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전단에</u> ----- <u>운행정지가 될 수</u> -----
제64조(운행정지명령) ①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<u>법 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라</u>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지 제38호서식의 운행정지명령서를 발급하고 해당 자동차의 전면유리창 우측 상단에 별표 10의 자동차운행정지표지를 붙여야 한	제64조(운행정지명령) ①----- ----- <u>법 제37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전단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현행	개정안
다. ② (생략) <u>제64조의2(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) ①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에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성명·주소, 자동차의 종류·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이 기재된 별지 제39호서식의 영치증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</u> <u>②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명령을 이행하고 등록번호판 영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반환하여야 한다.</u>	- ②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
제150조(전산처리하는 업무)① (생략) 1~7. (생략) 7의2. ----- 명령 및	제150조(전산처리하는 업무)① (생략) 1~7. (생략) 7의2. -----명령에

현행	개정안
<u>등록번호판 영치에</u> -----	-----
8~9 (생략)	8~9 (생략)
②~③ (생략)	②~③ (생략)